

韓·中·日간 漁業資源 管理 問題와 展望*

李 光 南**

Prospects and Management Issues on the Fisheries Resources among
Korea-China-Japan

Lee, Kwang-Nam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모색 |
| II. 신어업협정체제의 영향 | V. 한·중·일간 어업협력 전망 |
| III. 우리나라의 어선감척사업과 TAC관리
제도 | 참고문헌
Abstract |

I. 서 론

한·중·일 3국은 오래 전부터 산업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어업 부문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 이유는 동북아 수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업자원과 높은 어장생산성 그리고 단일 해양생태계 등의 자연적 조건을 고려해 볼 때, 3국의 어업은 어장과 자원의 동질성이라는 특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 초반까지는 상대적으로 어업생산력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은 동 수역과 한국측 연근해 수역에 대하여 일방적·광역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한국어업이 발전하여 경쟁적인 여건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현재 까지 이르고 있는 동 한·일 어업관계는 역사적으로 특수성을 띠고 있다. 또한, 1980년 대 이후에는 중국어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3국간에 경쟁적인 어업체제가 성립되었다. 특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1996년 한국·중국·일본의 동 협약 비준, 협약에 따른 한·일, 한·중, 중·일 간의 어업협정은 본격적인 EEZ 경계획정 이전의 『잠정적 어업협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일 해양생태계 등의 자연적 조건들을 고려해 볼 때 3국의 어업은

접수 : 2002년 2월 10일, 개재 확정 : 2002년 6월 24일

* 본 논문은 2001년 12월 12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제2회 한일 공동 심포지움('21세기의 수산업 : 한일의 현상과 장래의 선택')에서 발표된 것임.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어장과 자원의 동질성이라는 특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의 생태계로서 일국의 어업관리가 잘못될 경우 타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EEZ 경계를 왕래하는 경계왕래성어종(Trans-Boundary Fish Stocks)의 경우는 동북아 3국이 상호 협력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자원고갈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자원관리에 대한 어업협력 필요성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한일어업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양국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3국간 어업협력 문제에 대한 연구는 여러 차례 있었으며¹⁾, 동 연구들의 협력 방안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좀더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측에서 살펴본 일본과 중국과의 어업관계 및 협정으로 인한 영향, 자원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어선감척사업과 TAC관리제도 추진 현황, 동북아 수역의 어업자원관리 문제 및 협력의 필요성 등을 논의한 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협력에 대한 전망을 논하였다.

II. 신어업협정체제의 영향

1. EEZ 체제하의 어장이용 상황 변화

연근해어업의 주어장은 1960대에는 울릉도, 제주도, 소흑산도를 중심으로 한 내측해역이었으나 어선세력의 증대와 성능의 향상으로 자원이 감소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어장이 외연으로 확대되어 1980년대 이후에는 동쪽으로 대화퇴 근해, 남쪽으로는 동중국해까지 확장되어 어업협정 이전까지 이들 어장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왔다.

그리나 한·중·일어업협정으로 어장 이용의 범위가 엄청나게 축소되었다. 즉, 한·중·일협정으로 인하여 국내 연근해어장이 60%(기존 946천km²에서 568천km²)가 축소되어 378천km²만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기존 946천km²에서 211천km²(22%)가 한·중·일간에 공동조업 및 공동관리 해역으로 설정되었다.

2. 신한·일 어업협정의 영향

한·일어업협정(1965년)은 33년 동안 양국 어업관계의 기본적인 틀로서 유지되어 오면서 양국간의 어업협력 및 어업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북해도 및 제주도 주변수역에서 양국간의 어업분쟁해결을 위한 조업자율규제를 실시하고, 그 이후 다른 주변 수역에서도 조업자율규제조치를 합의함으로써 양국의 어업현안 문제를

1) 주요 관련 보고서 및 논문으로는 KMI(2000) 동북아 수산협력에 관한 연구, 박재영·최종화(2000) 「한중어업협정의 평가와 과제」, 육영수외(1997) 「한중일간어업자원정책비교와 어업자원관리방향 연구」, 최정윤·최종화(1999), 「동북아지역 국제어업협력체제의 구축과 운영 방향」 등이 있음.

해결하여 왔다.

한편, 우리 나라의 어업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하여 한·일 어업협정상 공동규제수역내 어획량이 일본측보다도 훨씬 많았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일본측 연안까지 진출로 양국간의 어업분쟁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왔다. 이러한 와중에 1990년 중반에는 한·일 양국이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함께 1996년에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EEZ선포와 관련된 국내법을 제정하였다.

즉, 신한·일어업협정은 1996년 8월 협상시작, 1998년 11월 11일 정식서명, 1999년 1월 22일 발효되었으며, 1999년 2월 5일에는 상대국 EEZ수역내 어획할당량 및 조건합의, 1999년 3월 18일에는 추가어업실무협상 타결되어, 현재까지 협정이 이어져오고 있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의 개정은 첫째,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에 따라 양국의 EEZ을 선포하였고, 둘째, 단속 및 재판관할권은 기국주의, 한국측 수역에서만 공동규제수역 설정 등 기존의 어업협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에 맞지 않고, 셋째, EEZ 경계 확정시 중간선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어업협정을 개정하고, 경계확정 협상을 계속하기로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신한일어업협정은 기존의 어장축소 뿐만 아니라, 울릉도와 일본의 오끼섬 주변 해역에 약 10만km², 제주도 인근해역에 약 2만8천km² 등 한반도 면적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일부 수역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공동으로 어업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일본측의 입어조건, 조업기간, 어구규제 등으로 최근 2년동안 일본측 EEZ 할당량 소진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일본측 EEZ 조업이 신한·일협정 이전보다도 협정이후에 어획량이 약 87%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어업인들의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표 1> 참조).

<표 1>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한국측 영향

조업수역	어업협정전(A)	어업협정후(B)	어획감소량(C) (A)-(B)	감소율 (C)/(A)
	3년평균(95, 96, 97)	2년평균(99, '00)		
일본측EEZ수역	223,000톤	29,642톤	193,358톤	86.7%

자료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자료에서 작성.

또한, 신한일어업 협정에 따른 한국의 근해어업 어업경영의 변화를 살펴보면, 조업상황의 경우 어업협정전에 비하여 출어회수 약 12회, 출어일수 26일, 어획량 11톤 등이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어업수지상황의 경우, 어업수입은 약 2천6백만원 줄어들었으나 반면, 어업비용은 약 2천9백만원 정도 늘어났다.

따라서, 어업이익은 협정이전에 비하여 약 5천5백만원 줄어들어 어업경영이 아주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으로 재산상황은 자산 2천8백만원 및 자기자본 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어업부채도 2천6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²⁾(<표 2> 참조).

<표 2> 신한일어업협정 전·후 근해어업 경영수지 변화 추이(1척 기준)

구 분	단위	어업협정전(A)	어업협정후(B)	증감(C) ((B)-(A))
		3년평균(96.97)	2년평균(99.00)	
조업상황	출어회수	회	56.7	45.5
	출어일수	일	199.7	173
	어획량	톤	240.8	229.5
수지상황	어업수입	천원	386,500	360,650
	어업비용	천원	320,146	349,385
	어업이익	천원	66,354	11,265
재산상황	자산	천원	344,812	373,130
	부채	천원	95,590	121,860
	자기자본	천원	249,222	251,270

자료 : 어업경영조사보고, 수협중앙회, 각년도.

어업경영이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라 3년 후, 일본과 동량(EEZ 할당량)을 해야하며, 이에 따라 2002년도 한·일간 입어교섭 결과, 2001년 보다 2만톤이 줄어든 89,773톤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3년평균(99~2001) 쿠타 소진율을 살펴보면, 한국 21.3%(평균 27,503톤), 일본 16.2%(평균 15,188톤)으로 한국측이 5.1%(평균 12,315톤)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표 3> 참조).

<표 3> 한일간 EEZ수역내 어획쿠타 및 소진율 현황

구 분	1999	2000	2001	2002
한국어선	어획쿠타	149,218	130,197	109,773
	어획량	27,335	31,422	23,752
	소진율	(18.3%)	(24.1%)	(21.6%)
일본어선	어획쿠타	93,773	93,773	93,773
	어획량	22,117	7,293	16,154
	소진율	(23.6%)	(7.8%)	(17.2%)

자료 : 2002년도 한일 어업협상 결과 주요내용 설명자료, 해양수산부, 2001.1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선들의 일본측 EEZ어획량은 신한일어업협정전의 약 190만톤의 약 14.2%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까다로운

2) 자산 및 자기자본이 증가된 것은 조사시 표본 업체의 선정 변경 및 어업경영이 악화된 어선들이 어선감척사업에 많이 응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입어조건(어구수, 망목제한 등) 및 입어절차, 경제성 문제(일본측 EEZ까지의 근거리조업에 따른 경제성), 수산자원의 변동 등으로 인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어업비용의 증가는 신어업협정체제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인건비 및 유가 상승 등의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신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축소에 따른 어획량 감소 부문과 어업경영비 증가 등이 우리나라의 어업부문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정적인 시너지효과가 야기되었다는 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3. 한·중어업협정의 영향

한·중간에는 과거의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어업분야도 중국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 있었으며, 특히 해방 이후에는 상호 적대 관계에 있었으므로 정부에서는 양국 어선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기 위하여 중·일 어업협정선의 동쪽 30마일에 조업 자제선을 설정하여 그 서쪽으로의 출어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개혁과 더불어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대거 출어해옴에 따라 양국간의 어업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양국간의 국교가 수립되면서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해소와 어업협정 체결, 어업분쟁사건 해결을 위하여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많은 회의를 거듭하여 왔다.

이러한 결과로 1998년11월 한·중 어업협정이 가서명된 후, 중국측의 양자강 하구수역 조업금지가 쟁점화되어 후속 입어교섭이 지연되었지만, 2000년8월3일 정식서명을 거쳐, 2001년6월30일 발효되었다. 한·중어업협정은 최초 5년간 유효, 이후 서면으로 상대국에 통보할 경우, 1년후 협정종료(협정발효 4년째 부터 협정의 종료의사를 상대국에 통보가능)하도록 되어 있다(<표4> 참조).

<표 4> 한일, 한중간의 어업협정 문안상의 차이

구 분	한·중 어업협정	한·일 어업협정
구성	전문, 16개 조항, 2개 부속서 및 양해각서	전문, 17개 조항, 2개 부속서 및 합의의 사록
수역구분	EEZ, 과도수역, 잠정조치수역, 현행조업 질서유지수역	EEZ, 중간수역
긴급피난	별도조항으로 규정	관련조항 없음
유효기간	5년	3년
파기절차	1년전에 상대국에 통보	6개월 전에 상대국에 통보
분쟁해결	관련조항 없음	별도조항으로 규정

이러한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우리측이 중국 EEZ에서 연간 1만2천톤의 어획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측은 우리 EEZ에서 최소 20만톤 이상 어획량

감소가 예상됨으로써, 연간 최소 3천억원 이상의 우리측 어업생산성 향상 및 서해안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행위 방지, 무질서하던 서해안의 어업질서 구축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협정에 따라 양자간 보호수역 어장 및 하철기·휴어제 등 중국 EEZ내 조업규제가 예상되는 통발, 저인망, 안강망 등의 조업이 협정발효 2년차(2003.1.1~12.31)부터 일부 업종의 조업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서해안의 경우도 한·중간에 잠정조치 수역과 과도수역이 설정되었으며, 과도수역은 협정발효 4년 후에 양국 EEZ로 귀속되나, 잠정조치수역 8만3천㎢은 양국이 공동조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표 5> 한일, 한중간 상호입어 및 할당량 현황

(단위 : 톤, 척수)

구 분		1999	2000	2001
한일간	한국측 일본 EEZ 입어할당량(A)	149,218 (1,704척)	130,197 (1,664척)	109,773 (1,464척)
	일본측 한국EEZ입어할당량(B)	93,763 (1,605척)	93,773 (1,601척)	93,773 (1,459척)
	(A)/(B)	1.59	1.39	1.17
한중간	한국측 중국 EEZ 입어할당량(C)	-	-	90,000* (1,402척)
	중국측 한국 EEZ 입어할당량(D)	-	-	164,400* (2,796)
	(D)/(C)	-	-	1.83

*) 2001. 7~2002. 12(1년6개월간), 협정이 2001년 6월 발효된 점을 감안, 허가주기를 1년단위(1. 1~12. 31)로 맞추기 위한 것임.

III. 우리나라의 어선감척사업과 TAC 관리제도³⁾

1. 어선감척사업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한국의 어선감척사업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과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

3) 본 연구에서는 제2회 한일공동심포지움(후쿠오카, 2001.12.12)을 준비하면서 양국간 발표 주제에 대한 범위와 내용 등의 협의에 따른 한국측 입장의 한·중·일간 자원관리방안의 일부에 한하여 세계하였음. 즉, 심포지움에서는 한일간에 어선감척사업의 추진 및 TAC 관리제도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있었으나, 동 논문에서는 일국(一國)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중·일 어업자원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음.

원사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량(MSY)』 수준으로 축소하여 어업생산성 증대와 상대적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어선감척 사업이다.

동 사업은 농발법 제11조(어업구조개선의 촉진) 제1항제1호의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시책 또는 지원대책으로 어선척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산업법 제52조(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제1항제2호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어선의 척수, 규모, 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농발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어업을 어업구조개선 촉진대상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수산자원보호에 현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상되는 어업
- 현저한 어업생산성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가 예상되는 어업
- 수입자유화 및 어업환경 변화 등으로 어업경쟁력이 크게 악화되거나 악화가 예상되는 어업
- 외국과의 어업협정 또는 국제어업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어업구조개선이 필요한 어업
- 기타 어업환경의 변화 또는 어업조정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어업

또한, 동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는 어업구조개선 촉진대상어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원조건, 대상어업의 선정기준, 시행방법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4,785억원의 재원으로 3,035척을 감선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이미 2001년까지 895척(1,299억원)을 감척하였고, 2002년도 125척(158억원), 2003년 233척(541억원), 2004년 308척(609억원)을 감척할 계획으로 있다(<표 6>, <표 7> 참조).

2) 국제규제에 의한 어선 감척사업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은 한·일, 한·중어업협정 등 국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일반감척사업(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과는 별도로 199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1999년에 제정된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폐업어선 지원, 실직어선원에 대한 실업지원금, 어구비 지원 등이다. 2001년까지 지원규모는 1,234척에 대한 폐업어선지원, 실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약 5,888억원이 소요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164척(913억원)을 감척할 예정으로 있다(<표 6>, <표 7> 참조).

<표 6> 어선감척사업에 관한 법·제도비교

구 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
근거법률	농안법 제11조 수산업법 제52조제1항제2호	어업협정관련특별법 제4조
보상 및 지원여부	보상	지원
보상 및 지원주체	정부	정부
사업목적	-연근해 어선세력 적정수준 감척하여 어업경쟁력강화 및 어민소득 증대기 여	-어업협정체결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에 대한 신속·종합지원 - 좌동
보상 및 지원 원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어업협정에 영향을 받는 폐업지원 어선 및 어선원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	어선어구 및 폐업보상비	어선어구 및 폐업보상비, 어선원 실업 지 원금
지원조건	① 어선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 : 국고보조 100% ② 폐업보상비 -연안어선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근해어선 : 국고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① 어선 등의 잔존가치평가액 : 국고보조 100% ② 폐업지원금 : 국고보조 90% ③ 어선원 실업지원금 : 통상임금의 6개월 분 국고보조
신청자격 중 주요내용	어업협정 관련 일정한 기간에 일본측 EEZ에 입어한 실적이 있는 어선 또는 동어선에 승선한 적이 있는 어선원이 어야 함(어선에 비중)	사업 신청마감일 기준 3년 이내의 기간 중 2년 이상 동종어업의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선주에 비중)
보상 및 지원금 산출	수산업법 제62조 별표4	수산업법 제62조 별표4

<표 7> 우리나라의 어선감척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척, 억원)

구 分	2001년까지		2002년 계획		2003년 계획		2004년 계획	
	척수	금액	척수	금액	척수	금액	척수	금액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895	1,299	125	158	233	541	308	609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1,234	5,888	164	913	-	-	-	-
합 계	2,129	7,187	289	1,071	233	541	308	609

자료 : 해양수산부.

2. TAC 관리제도

한국의 TAC 관리제도는 국내외 어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해양생물자원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특히, 한·일, 한·중간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동북아 주변수역에 대한 새로운 어업질서 정착과 한국의 EEZ 자원관리의 필요성 증대 및 어획쿼터 배분 등 상호입어에 대비하여 1999년부터 도입·시행되었다.

관련제도로는 수산업법(95.12) 및 수산자원보호령(96.12) 개정을 통하여 TAC 제도 시행근거(수산업법 제54조의 2,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의 2 및 3)를 마련하였다. 또한,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98.4)을 통하여 TAC제도(TAC 할당, 어획실적 보고, 지도·단속 등 제도 운영 등)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하였다(<표 8> 참조).

<표 8> 현행 TAC 관련 자원관리 제도

법 규	내 용
수 산 업 법	허가제에 의한 어업자원관리 명기, TAC제도 시행근거 마련
수산업법시행령	조업방법 명시
수산자원보호령	기술적 수단, 선복량제한, 균해어업 조업구역 및 정한수, TAC의 결정, TAC 할당근거, TAC 심의위원회 설치 및 TAC 관리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어선의 규모, 연안어업의 정한수,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총허용어획량의관리에관한규칙	세부적인 TAC 실시방안 규정

TAC 적용대상 수역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과 중간수역(잠정조치수역)이며, 원칙적으로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제외하고 있다. 2002년도 TAC 실시대상 8개어종의 선정은 어획량이 많고 산업적 비중이 큰 대중어종(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자원감소가 현저하여 보호가 필요한 정착성 어종(붉은대게, 키조개, 개조개), 어장 및 어구분쟁으로 어업조정이 필요한 어종(대게), 시도지사가 자원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한 어종(제주소라) 등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표 9>, <표 10> 참조).

한국의 TAC 제도는 1999년부터 일부어종(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삼치 등)에 대하여 TAC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TAC 업종 및 어종 선정, TAC 산정 및 절차, 할당방식의 타당성·합리성 부족 등 2002년 현재는 TAC 제도 실시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 중에 있다⁴⁾.

일부어종에 대하여 TAC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중에 있다. 특히, 회유성 및 경계왕래어종(Trans-boundary Fish Stock : 전갱이, 오징어, 고등어, 정어리

4)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李 光 南

등)에 대한 TAC 관리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국간(일본 및 중국) TAC 관리제도를 기초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으로, 한·중·일 3국의 어업협력 체제가 구축되는 시기로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동북아 어업협력 구축방안과 더불어 이것이 시행된다면, 한국의 TAC 제도 시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한국의 TAC 관리제도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적용대상수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국가와의 협정에 의한 한국 EEZ수역과 중간수역(잠정조치수역)을 포함한 수역 및 필요에 따라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영해제외) 포함 외국어선의 경우 어업협정 내용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 적용
어종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획량이 많고 경제적 가치가 큰 어종 주변수역에서 인접국 어선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어종 자원감소로 보존관리가 필요하거나 업종간의 분쟁으로 어업조정이 필요한 어종
관리대상어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오징어, 말쥐치, 삼치, 갈치, 참조기, 부세, 병어, 강달이, 꽁치, 명태, 도루묵, 붉은대게, 개조개, 키조개, 소라, 대게 등 <19개 어종(4개어 종 추가)>
2002년 시행어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대게, 개조개, 키조개, 소라(8개어종) ·붉은대게, 개조개 및 소라어종은 본격적 실시 추진 ·키조개는 시범사업 실시 및 본격적 실시를 위한 기반조성 추진 ·고등어 등 희유성 어종은 주변국과의 어업협력체제 구축시까지는 시범사업보다 강화된 실시방안 추진

자료 : 해양수산부.

<표 10> 한국의 어종별 TAC 물량(2002)

대상업종	대상어종	2002		2001 TAC	CPEU
		ABC	TAC		
대형선망	고 등 어	157,000 ~ 188,000	160,000	165,000	감소추세
	전 갱 이	9,000 ~ 20,000	10,600	10,600	감소추세
	정 어 리	17,000 ~ 21,000	17,000	19,000	낮은추세
근해통발	붉은대게	13,000 ~ 25,000	28,000	28,000	감소추세
	대 게	1,000 ~ 1,300	1,220	-	변동추세
잠수기어업	개 조 개	7,000 ~ 9,000	9,000	9,500	감소추세
	키 조 개	3,700 ~ 5,500	2,500	4,500	적정수준
마을어업	제주도 소라	1,900 ~ 2,000	2,058	2,150	감소추세

* ABC : 생물학적 어획요구량.

CPEU : 단위노력당 어획량.

자료 : 해양수산부, 총허용 어획량(TAC)제도 기본계획 및 2002년도 시행계획(2001.12).

IV.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국제해결방안 모색

동북아 주변수역의 어장 중에서 동해, 남해, 황해는 잠정약정에 따른 신어업질서 형성으로 인한 어업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협정에 따라 양자간 어업협정에 의한 관리는 정착성 및 저서어종의 경우는 자국 수역내에서 적절한 자원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EEZ 경계를 외래하는 회유성 및 경계외래성 어종의 경우에는 주변국가간 협력에 의하지 않고는 자원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동북아 해역의 어업자원 공동관리 필요성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한·중·일간 협력의 필요성

1) 잠정약정으로의 신어업질서 형성에 따른 어업관리 문제

최근 몇 년사이 한반도 주변수역에는 3개의 어업협정이 생겨났다. 1997년 11월에 체결된 중일어업협정, 1999년 1월22일 신한일어업협정 발효, 2000년 6월30일 발효된 한중어업 협정이 그것이다. 이를 어업협정들은 국제법상 잠정어업협정(暫定漁業協定)들이며, 약간의 명칭만 상이할 뿐 모두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있다.

<표 11> 한·중·일간 쌍무적 어업협정 체계

구 분	신한·일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	일·중어업협정
1. 협정의 구성	전문/본문17조/부속서2/합의의사록/외교부장관서한	전문/본문16조/부속서2/양해각서	전문/본문14조/부속서2/합의의사록/외교부장관서한
2. 기본이념	① 해양법 정신존중 ② 자원보존, 최적이용 ③ 어업질서 확립	① 자원보전, 합리적이용 ② 정상 어업질서 유지 ③ 어업협력 강화	① 전통적 협력 관계 ② 새 어업질서 확립 ③ 자원보전, 최적 이용
3. 협정 수역	① 경제수역 35' ② 동해중간수역 ③ 남해중간수역	① 경제수역 60' ② 과도수역(4년간) ③ 잠정조치수역	① 경제수역 52' ② 잠정조치수역 ③ 27' 이남수역
4. 분쟁해결수단	우선 외교적 교섭 제3의 중재위원회 결정	없음	없음
5. 협정의 효력	· 3년 + 자동연장 · 종료통고 6개월 후	· 5년 + 자동연장 · 종료통고 1년 후	· 3년 + 자동연장 · 종료통고 6개월 후
6. 공통적 사항	① 경제수역 상호입어와 관할권 행사의 연안국 주의 ② 중첩수역 관할권 행사의 선적국주의 ③ 상호주의 기초 긴급피난권 인정 ④ 경제수역 경계획정 노력 계속 ⑤ 어업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권능 ⑥ 국제법문제에 대한 배제 조항		

자료: 최종화, 『현대 한·일어업 관계사』, 세종출판사, 2000, p. 388.

즉, 중일어업협정에는 『잠정조치수역(暫定措置水域)』이라는 협정상 명칭으로 중간수역과 입어허가불필요수역이 있으며, 신한일어업협정에는 정식으로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중간수역이 규정되어 있고, 한중어업협정에는 과도수역 및 잠정조치수역,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 등이 있다. 이들 수역들은 중간수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중간수역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한·중·일 주변수역은 3국간 포괄적인 체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조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동어장으로 개발되어 온 동중국해의 경우는 한·일 제주도남부 중간수역, 중·일 잠정조치수역, 한·중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 등이 서로 겹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어업협정에서 조업적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다른 어업협정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⁵⁾.

2) TAC제도 시행에 따른 회유 및 경계왕래 어족자원의 관리 문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1996년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7년부터 TAC 어업관리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으며 강제규정 발효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선감척, 지원관리와 비용부담 개선방안, 어업허가 등 어업관리제도 개선, 유어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TAC 어종 관리대상 선정기준은 ① 어획량이 많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자원, ② 자원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긴급히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해양생물자원, ③ 일본 주변 수역에서 외국 어선에 의한 어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생물자원 등이다. 또한, TAC결정은 장관이 중앙어업조정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⁶⁾.

중국의 경우는 1986년 어업법을 제정하여 허가제를 핵심으로 금어제도 등 기술적 수단을 보조적으로 실시하였고, 1990년대 중반부터 신규허가 및 어선톤수 등의 제한을 강화하고 중국 전해역에 대해 하계 휴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TAC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① 1996년 UN해양법협약 비준 및 1998년 EEZ법 제정, ②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자연자원의 자산화, ③ 허가제 및 금어제의 한계, ④ 어업협정으로 어장확대 불가능, ⑤ 자원감소 징후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⁷⁾.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2000년 10월 31일 어업법을 개정하여 TAC 제도 도입근거 마련 및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TAC 결정은 매년 국무원 어업행정 주관부문에서 자원의 조사와 평가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TAC 배분은 어업국에서 결정한 TAC를 성, 자치구, 직할시정부 등 행정체계에 따라 배분하고, 행정기구는 생산주체별(어업자, 어선, 기업, 생산자단체)로 배분하며 할당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경우 이듬해에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⁸⁾.

이와 같이 동북아 3국 중, 일본의 경우는 TAC 관리제도를 1996년부터 도입하여 1997

5) 박재영·최종화, 「한중어업협정의 평가와 과제」, 수산경영론집, 제31권 제2호, 2000, p.87.

6)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총허용어획량(TAC)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7) KMI, 「어업자원관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최종보고회, 2001. 7, p.14.

8) 전 캐서.

년부터 7개어종에 대하여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도 1999년부터 시범실시, 중국의 경우도 2000년 10월 31일 어업법을 개정하여 TAC제도 도입근거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TAC 관련 시범 실시 어종들은 자국의 정착성 어종들 이외에도 경계왕래성 어종인 전갱이, 정어리, 고등어류, 꽁치, 명태, 오징어 등이며, 중국의 경우도 최근 멸치 등에 대하여 TAC 제도를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향후 일부 어종들의 경우는 EEZ 경계왕래성 어종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TAC제도 시행에 따른 회유 및 경계왕래 어족자원의 관리 문제는 3국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이 될 것이고, 어업자원 공동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12> 참조).

<표 12> 한·중·일간의 어업관리방법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중 국
조장 수단 자원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묘생산 및 방류 ◦ 인공어초 투하 ◦ 연어·대구방류사업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어업시행 - 종묘생사 및 방류 ◦ 연어·송어방류산업 ◦ 연안어장 정비사업 - 인공어초 투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묘생산 및 방류 ◦ 인공어초 투하
기술적 수단 규제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어기 ◦ 금어구 ◦ 체장제한 ◦ 망목제한 ◦ 특정어법 금지 ◦ 판매 및 소지의 제한 ◦ 이식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어기 ◦ 금어구 ◦ 유어제한 ◦ 체장제한 ◦ 망목제한 ◦ 특정어법 금지 ◦ 판매 및 소지의 제한 ◦ 이식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어기 ◦ 금어구 ◦ 휴어구 ◦ 체장제한 ◦ 망목제한 ◦ 특정어법 금지 ◦ 판매 및 소지의 제한 ◦ 치어비율 제한
어획량 통제수단	◦ 99년부터 시범실시 (TAC)	◦ 97년부터 시범실시 (TAC)	◦ 2000년 12월 근거법 마련(TAC)
어획노력량 통제수단	◦ 어업허가제	◦ 어업허가제	◦ 어업허가제
독특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허가 정수제 시행 ◦ 연안어장목장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허가 정수제 시행 ◦ 연안어장목장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조성세 도입 ◦ 치어비율 조사

자료 : 옥영수외, 한·중·일간 어업자원정책비교와 어업자원관리 방향 연구, KMI, 1997, p.101에서 재작성.

<표 13> 한·중·일간 TAC제도 시범시행 어종 현황

국명	TAC 어종	회유 및 경계왕래성 어종
한국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 대개, 대개, 개조개, 키조개, 소라	
일본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꼽치, 명태, 대개, 오징어 등	전갱이, 정어리, 고등어류, 꼽치, 명태, 오징어 등
중국	한국, 일본과 유사한 어종이 될 가능성 높음.*)	

*) 최근 멸치등에 대해 중국정부에서 TAC를 설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나, 향후에는 한국, 일본과 유사한 일부 경계왕래성 어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해결방안 모색

동북아해역은 하나의 생태계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일국의 잘못된 어업관리는 타국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서로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업협력은 3국의 어업제도 및 어업현실이 상이하고, 관할수역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단기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난 후,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지역어업 협력기구 설립 추진에 대하여 논하고, 한일간의 역사적 특수성과 상호호혜 정신에 입각한 양국간의 국제분업을 통한 협력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⁹⁾.

1) 단기적인 협력 방안

효율적인 자원관리 측면에서는 한·중·일간 중복되는 수역에 대해 기존의 양자협정과는 별도로 3국간 다자협정을 체결하고 이의 운영을 위한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이는 3국간의 어업제도 및 현실이 상이하고 관할수역에 대한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단시일내 이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어업자원에 대한 생물학적 자원조사, 어업별 어구어법 공동조사, 어업의 사회·경제적 역할 분석 등에 대한 상호 수산통계 자료교환 및 공동연구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3국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의 구축 및 이에 따른 특정수역 또는 특정해역을 상대로 하는 공동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례로 이미 언급한 TAC제도를 근거로 한 관리 방안을 3국간 협의를 통하여 마련하고, 이를 각국의 어업제도 및 어업협정 시행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다.

9) KMI(2000) 동북아 수산협력에 관한 연구, 박재영·최종화(2000)「한중어업협정의 평가와 과제」, 최정윤·최종화(1999), 「동북아지역 국제어업협력체계의 구축과 운영 방향」, 육영수외(1997)「한중일간어업자원정책비교와 어업자원관리방향 연구」 등에서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음을 밝힘.

(1) 생물학적 자원 공동 조사

어업자원의 관리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관리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지표로는 MSY, MEY, BEY, OSY 등이 있다. 따라서, 특정한 어업자원에 대한 사망계수, 성장율, 연령, 어획계수, 자원량 등에 대한 파라메타가 추정되어야만 다양한 어업관리의 지표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자료에 따르며, 한중일 3국은 각국의 자국내 수산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MSY 등의 지표를 어업관리 목표 및 TAC설정에 활용하고 있음으로, 이는 3국 모두 단일 생태계등의 자연적인 조건을 고려해볼 때, 지속적 어업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한중일 3국이 협력하여 보다 정확한 파라메타를 추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과학적인 어업관리 목표를 통한 공동의 자원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각국에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2) 어업관리의 투명성 문제

일국이 아무리 합당한 어업제도가 확립되어 있다하더라도 타국에 의해 신뢰되지 못한다면 3국 공동의 어업관리 노력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짐으로, 어업관리를 위한 규제와 관련하여 각국은 수산행정이나 수산통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여야만 할 것이다. 특히 어업자원은 그 산업적 본질상 공유재산적(common property) 성격이 강함으로 인하여 사유재산화되지 못하고 행정처분에 의해 성립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어업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업자원 관리의 의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업자원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은 3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3국 모두 수산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3국간의 통계자료 상호교환, 모니터링 공동실시 등을 통한 상호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어업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각국의 자원관리 기준 조정

어획률의 체장제한, 망목제한, 금어기 및 금어구 등의 어업관리 방식은 각국의 어업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적용되는 기준이 상이할 경우 공동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어려워진다. 이 중에서 금어기나 금어구의 경우는 각국이 처한 상황(특정 어종 생태학적 특성, 자원정도 등)에 따라 다르고, 최소체장제한의 경우도 한국 23개 어종, 중국 12개 어종(별해구 국한), 일본 30개 정도로 차이가 나고, 어획률 체장제한도 각국마다 차이가 난다(<표 14> 참조).

따라서, 동북아의 단일생태계적 특성 및 공동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역에 대한 관리 문제와 3국의 어업관리방법에 유사한(허가제 및 TAC 관리제도 시행) 공통점이 있으므로, 어업관리방식(체장, 망목제한, 금어기, 금어구 등)을 각국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 자원관리 기준 조정 및 통일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동북아 자원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표 14> 한중일간 어획 최소체장 비교

어 종	한 국	중 국	일 본
참 돈	20cm	19cm	6~9cm
방 어	20cm	...	15cm
도 루 목	10cm	...	6cm
꽃 계	5cm	8cm	13~15cm
전 복	7~10cm	...	7.5~12cm
오분자기	3.5cm	...	3~5.5cm
소 라	5~7cm	...	2~7cm

자료 : 육영수외, 「한중일간어업자원정책비교와 어업자원관리방향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1997, p. 107.

(4) 어구어법의 표준화

동북아 3국의 공동의 공정한 어업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국별로 상이한 어획노력 수준을 하나의 틀로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어획노력수준의 표준화보다는 어느 정도 어구어업에 대한 표준화라도 이루어져야 공동어업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각국별로 다르게 허가되고 있는 어구어법의 명칭과 내용, 어선건조에 대한 기준, 어구에 대한 망목크기, 그물크기, 어선장비 등의 점진적인 표준화에 대한 논의 및 협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각국이 투하하고 있는 어획강도가 개략적이라도 파악되고, 이를 기초로 어획강도를 상호조정하여 공동의 이익이 되는 자원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때문이다.

2) 장기적인 협력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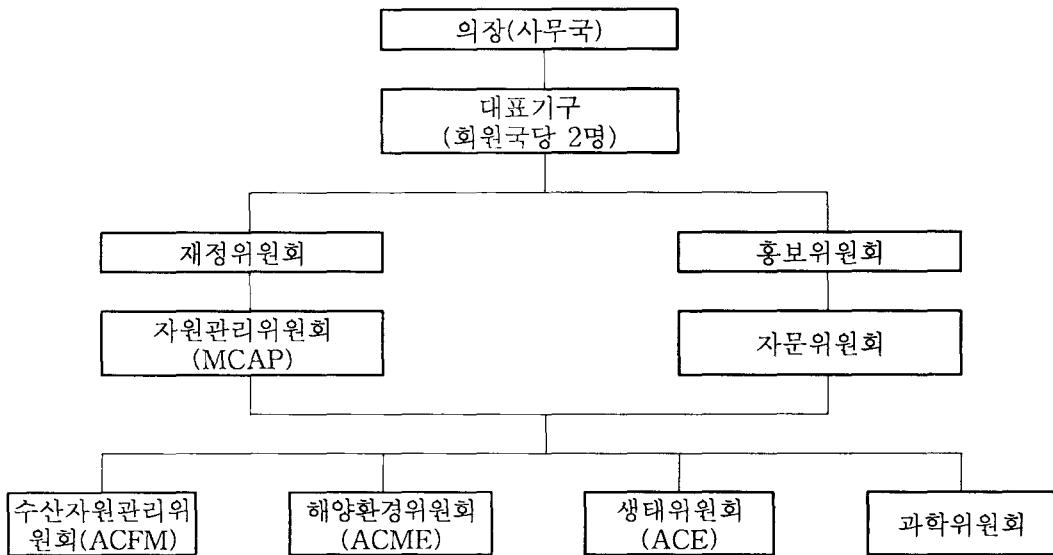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협력의 신뢰를 바탕으로 동북아 전체수역을 관장하는 지역어업기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간 어업에 대한 상호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복잡하고 어려운 어업자원관리를 조정 및 수행해가기 위해서는 지역어업기구의 설립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 지역수산국제기구 설립 사례는 북해수역에서의 국제해양탐사위원회(ICES), 북동대서양수산위원회(NEAFC, 1953), 캐나다 New Foundland 수역의 북대서양수산기구(NAFO, 1982) 등이 있으며,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어업기구의 역할, 경비 부담, 관할 범위, 설립지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지역어업기구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어장 이용에 따른 자원이용세를 징수하여 공동관리기금의 일부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중국의 경우 어업관리와 관련된 특징으로는 자원이용세(어업자원증식보호비)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자원이용세의 효시는 1985년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 『황해 및 빨해

에서의 대하 보호 증식기금의 징수와 징수금의 사용규정』이다. 이러한 자원이용에 대한 세금부과의 근거로는 『생산자도 이익을 향유하는 대신 자원보호에 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이다. 한국의 경우는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해 수산업법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부담금』을 면허·허가·신고를 받을 경우 징수하고 있다.



<그림 1> 국제해양탐사위원회(ICES) 조직도¹⁰⁾

따라서, 자원이용자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공동관리 수역을 이용하는 각국의 어업자들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시켜, 어업인들의 자원보호에 대한 의식전환 효과와 이러한 비용 부담은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한·일간의 국제분업을 통한 어업협력 방안

중국과는 달리 한·일 어업관계의 역사적 특수성과 상호호혜 정신, 유엔해양법협약 제62조 제3항(배타적경제수역에서 관습적으로 어로행위를 해온 국가의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함) 등을 참작하여, 양국간의 국제분업을 통한 어업협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특정한 수역을 대상으로 과학적 어업자원 조사를 기초로 양국간에 자본과 노동, 어로기술, 수산물소비 등을 고려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국가가 특정한 부문을 담당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특정한 어업에 있어서 한국은 생산을 담당하고, 일본은 어획된 수산물의 소비를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수산물을 일

10) 1964년 설립되었으며, 회원은 19개국이고, 주로 북해수역의 수산자원관리 및 해양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음.

李 光 南

본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증가 주요 어종은 갈치, 명태, 꽁치 등으로 동 어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어장을 중심으로 먼저 국제분업을 추진하는 방안들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¹¹⁾.

V. 한·중·일간 어업협력 전망

지금까지 한·중·일 수산협력강화를 위한 노력들은 일본측의 수산자원조성센터(제주설치) 설립제의(1998.2)와 우리측의 센터 설립을 위한 추진준비(후보지조사, 법령제정 등), 한·일 의원연맹에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1999. 11), 한·중 양국 및 3국간 자원보존관리 필요성 동감(2001. 4. 6) 등이 있다.

따라서, 한·중·일간의 자원관리 등을 위한 어업협력은 3국 정부간의 지속적인 협의도 필요하지만, 민간차원의 교류 및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일 어업관계의 역사적 특수성 등을 고려한 국제 분업체계에 따른 협력과 같은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와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해양환경과 어업경제를 공유하는 동북아 수역은 자원의 공동관리가 필수불가결하며 관계국간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멀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 김대영, “동중국해·황해에 있어서 국제적어업재편과 과제”, 수산경영론집, 제30권 제1호, 1999.
- 박재영·최종화, “한중어업협정의 평가와 과제”, 수산경영론집, 제31권 제2호, 2000.
- 류정곤외, 총허용어획량(TAC) 할당제도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KMI, 1997.
- 옥영수외, 한중일간 어업자원정책비교와 어업자원관리방향 연구, KMI, 1997.
- 이광남, 한중일 어업협정이 국내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산경제연구원, 1998.
- 외교통상부,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어업 및 자원관리 문제, 1999. 1.
- 수산발전정책기획단, 도전받고 있는 한국 수산업과 발전전략, 2001. 6.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1995~2000.
- 수협중앙회, 유엔해양법협약과 어업, 1997. 9.

11) – 일본으로 수출(백만불) : 1,280('95) → 1,125('00), 12% ↓
수입(백만불) : 46('95) → 185('00), 302% ↑
– 수입증가 주요 어종 : 갈치, 명태, 꽁치 등

- 최정윤 · 최종화, “동북아지역 국제어업협력체제의 구축과 운영 방향”, 수산경영론집, 제30권 제2호, 1999.
- 최종화, 현대 한 · 일어업 관계사, 세종출판사, 2000.
- 해양수산개발원, 동북아 수산협력에 관한 연구, 2000.
- 해양수산부, 총허용어획량(TAC)제도 기본운영계획 및 시행계획, 1998~2001.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www.momaf.go.kr)
- KMI, 동북아 수산협력에 관한 연구, 2000.
- KMI, 어업자원관리 중 · 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 자료, 2001. 7.

Prospects and Management Issues on the Fisheries Resources among Korea-China-Japan

Lee, Kwang-Nam

Abstract

The sea of north-east Asia is biologically interrelated and one country's mishap in the management of fisheries could have a critical effect upon the other. Accordingly under the TAC system adopted by all the countries of Korea, Japan and China, the mismanagement of trans-boundary fish stocks under the provisional fisheries agreement prior to the delimitation of EEZ could lead to the irrevocable depletion of fisheries resources in case of absence of close cooperation among the countries concerned.

To tackle the problems above, it is necessary, from a short term perspective, to promote the combined efforts to do researches on fisheries resources, find way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fisheries management, adjust the fisheries management regulations of each country, standardize fishing gears and methods, and exchange fisheries-related statistics and data for socio-economic analysis and strengthen joint research activities for the mutual benefits.

From a longer term prospective,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 need to be set up to oversee the whole area of north-east Asian sea. The organization as such could play a role in adjusting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Korea, Japan and China, and efficiently manage the fisheries resources, which is complex and challenging in nature.

In addition, unlike China, the historical fisheries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spirit of reciprocity and the Article 62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Sea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seeking for fisherie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In other words, the data obtained through the joint researches on the fisheries resources for the specific ocean along with such factors as capital, labor, fisheries technology and consumption of fish products could be used to assign the specific sector of fisheries to the country who has a comparative advantage, thus achieving the mutually benefiting results

Up to the present, concerted efforts by Korea, Japan and China on the fisheries cooperation have been consistently made, but the results have yet to be

Lee, Kwang-Nam

materialized. It is also beyond doubt that governmental consultations among the countries should be made on a consistent basis, bu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xchanges and related joint researches will more likely help bring about the desired fruition in a shorter time.

Key Words : Fishery Agreement, Resource Management, Trans-Boundary Fish Stocks, TAC, Fisheries Cooperation System